

지휘서신 제3호 : 군내 기회 균등(MEO)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·조치

1. 본 지휘서신은 MEO 관련 기존의 모든 서신에 우선한다. 본 서신의 효력은 철회 또는 대체되기 전까지 유지된다.
2. 관련근거
 - 가. 美육군규정 600-20 육군지휘규칙 (2020. 7. 24.)
 - 나. 美8군사령부 지휘서신 제3호 (2020. 10. 3.) 군 내 기회 균등(MEO)
 - 다. 美제2보병사단 지휘서신 제8호 (2023. 5. 18.) 비위사실 처리 위임불가 원칙
 - 라. 美육군 지침 제2015-39호 성(性) 지향성에 관한 군 내 기회균등(MEO)
 - 마. 美군형법 제92조, 제133조, 제134조
3. 제2보병사단/한미연합사단은 위법한 차별 및 직장내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며 각 개인이 능력, 성과, 잠재력을 바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. 차별은 개인 또는 집단이 인종, 피부색, 성별 및 성적체성, 국적, 종교,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괴롭힘, 위협, 모욕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발생한다. 이는 인종, 피부색, 성별 및 성적체성, 국적, 종교, 성적 지향 등에 관한 비하 용어 사용으로 직장내 불화를 야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
4. 군인은 영내 및 영외, 근무중 및 근무외, 영내·외에서의 직장·가정·여가 활동 중을 모두 포함하여 본 지휘서신의 내용을 준수한다. 군내 기회균등 정책에 반하는 행위는 군형법 제92조, 제133조 및 제134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.
5. 제2보병사단/한미연합사단 소속 군인은 직장내 괴롭힘(가혹행위, 강요 및 따돌림, 차별행위, 괴롭힘 등)을 인지할 경우 지휘관, 상급자 또는 기회균등 관련부처(MEO)에 적시에 보고한다. 지휘관은 기회균등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, 괴롭힘, 불이익, 협박 또는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6. 美8군 기회균등 및 직장내괴롭힘 상시 핫라인(24/7 MEO and Harrassment Hotline)은 기회균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다. 핫라인은 공식 MEO 보직에 임무수행 중인 MEO 전문가(Equal Opportunity Leader와는 다른 것으로서 MEO Professional이라고 한다)만이 답변할 수 있다. MEO 전문가는 즉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24시간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.

가. 일과시간 중(월-금 0900-1700) 전화: DSN 215-755-2535

나. 일과시간 외(월-금 1700-0900, 주말·공휴일 등 비근무일) 전화: 010-8520-4656

7. 민족의 달 등의 특별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육군 전통의 달(Army Heritage Month)로 대체된다. 각 제대 지휘관은 Army Heritage Month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정도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8.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사단 Equal Opportunity Office 로 하며 담당자는 사단 Equal Opportunity Program Manager (DSN 756-7342) 및 Senior Equal Opportunity Advisor (DSN 756-6375)로 한다. 끝.

W.D.T.

WILLIAM D. TAYLOR
Major General, USA
Commanding

